

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를 건

의안 번호	157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9. 6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0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: 5,680천원

1)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구 출연금 지급

2) 산출기준

가)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5/10,000

나) 2018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37,865,305천원 × 1.5/10,000

3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4. 의결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나. 출연금 및 「지방재정법」 관련 법령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: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

나. 출연액: 5,680천원(구비) ※ 2019년 출연금: 5,563천원

다. 출연기한: 매년 3. 31.

2. 출연근거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3. 산출기초

가. 출연액: 5,680천원

나.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5/10,000를 출연

※ 2018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37,865,305천원 × 1.5/10,000

4. 출연대상

가. 기관명: 한국지방세연구원

1)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

2) 소재지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
3) 개원: 2011. 4. 20.

4) 기구/인력: 원장, 부원장, 2본부 1관 10실 5센터, 정원 92명(현원 65명)

나. 이사회현황

1) 이사회 구성: 이사(12명), 감사(2명)

2) 이사장 및 원장: 허성관(이사장) ※ 원장: 현재 공석

3) 이사회

가) 당연직(2명):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,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

나) 광역자치단체(4명): 울산 기획조정실장, 세종시 기획조정실장,

경기도 자치행정국장, 경북 기획조정실장

4 (제218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
다) 기초자치단체(5명): 충남 논산시장,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,
충북 청주시 부시장, 전북 무주군 부군수
전북 순창군 부군수

라) 민간이사(1명):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(금재덕)

※ 이사회 임기

- 이사장·원장: 3년, 당연직이사: 해당직위 재임기간

지방자치단체이사: 1년, 민간이사: 2년

다 주요사업

- 1)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- 2)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
- 3)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, 구제업무 지원

5. 기대효과

가.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
나.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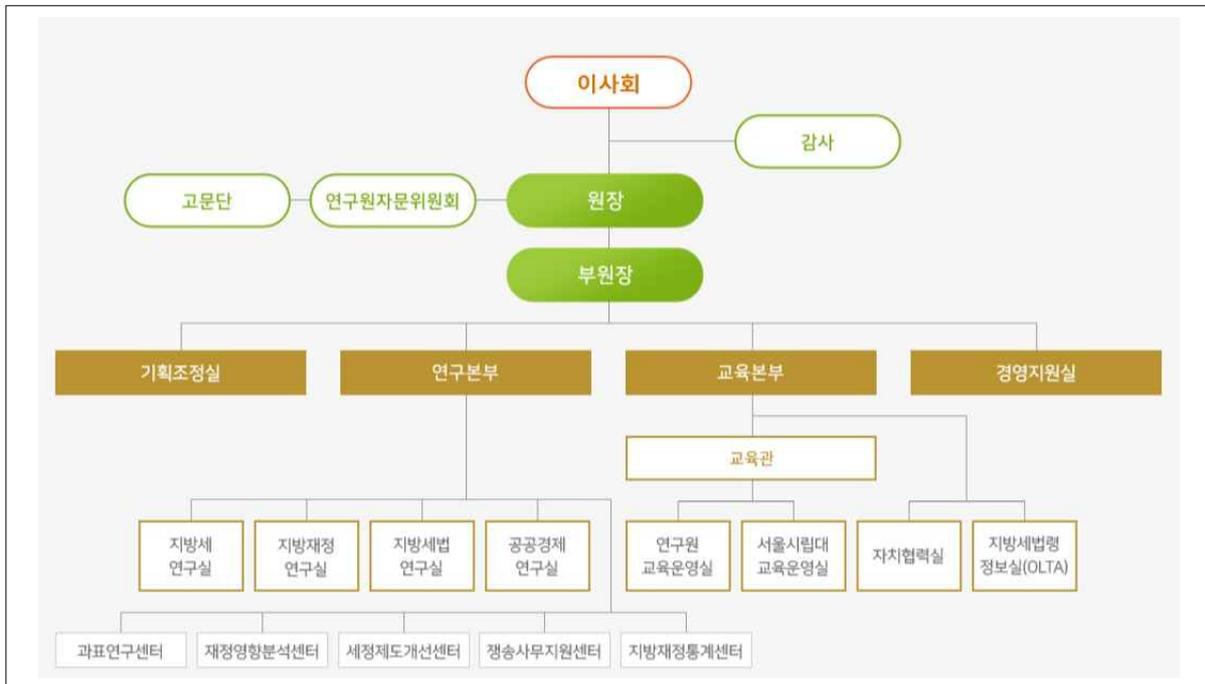
○ 총인원 : 76명

(2019.6.18.일자 기준)

구분	계	원장	부원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사무직	시설직
정원	92명	1명	1명	53명	2명	5명	28명	2명
현원	65명	-	1명	37명	2명	2명	22명	1명
총인원	76명	정원의 인원 11명 (위촉연구원 2, 행정원 1, 파견공무원 8)						

※ 연구직(37명) : 연구위원직 21명, 연구원직 16명

○ 조직 : 2본부 1관 10실 5센터



○ 예산 : 131.6억원

(단위 : 억원)

수입		지출				
출연금	기타	인건비	사업비*	경상경비	대출상환	기타
108.4 (82%)	23.2 (18%)	63.8 (48%)	32.8 (25%)	9.1 (7%)	23.0 (18%)	2.9 (2%)

[계정별 예산] 일반회계 127.5억원, 수탁용역특별회계 14.1억원 (전출금10.0억원)

* 사업비는 수탁연구비 포함

○ 이사회 명단 및 임기

구 분	성 명	직 함	임 기
이 사 장	허 성 관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2017.12.22. ~ 2020.12.21.
부이사장	황 명 선	충청남도 논산시장	2019. 2. 28. ~ 2020. 2. 27.
이 사	(공 석)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당 연 직
이 사	이 용 철	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	당 연 직
이 사	김 하 균	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2019. 2. 28. ~ 2020. 2. 27.
이 사	이 용 석	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	2019. 2. 28. ~ 2020. 2. 27.
이 사	김 기 세	경기도 자치행정국장	2019. 2. 28. ~ 2020. 2. 27.
이 사	김 장 호	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	2019. 2. 28. ~ 2020. 2. 27.
이 사	박 상 신	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	2019. 2. 28. ~ 2020. 2. 27.
이 사	김 향 섭	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	2019. 2. 28. ~ 2020. 2. 27.
이 사	이 경 진	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	2019. 2. 28. ~ 2020. 2. 27.
이 사	금 재 덕	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2019. 2. 28. ~ 2021. 2. 27.

감 사	김 영 빈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당 연 직
감 사	노 홍 래	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	2018. 2. 28. ~ 2020. 2. 27.

출연금 관련 법령

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“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“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“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